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4일, 서영교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3.1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5.) 상정, 축조심사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12.)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영교의원)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

해서는 의뢰인이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 변호사와 한 상담내용 및 이에 대한 변호사의 조언 내용이 비밀로 보장되어야 함.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유불리를 불문하고 진실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만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가 충분한 조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임.

그러나 현행 「변호사법」, 「형법」 등은 변호사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서류 등 자료를 공개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할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이메일, 문서 등의 의사교환 내용을 수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하더라도 변호사가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실정임.

이와 달리 미국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구별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있고, 독일은 비밀유지와 관련하여 이를 변호사의 의무로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권리로서 보호하고 있으며, 영국도 보통법에 따라 변호사 특권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 있는 경우나 의뢰인이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를 범죄를 행하거나 방조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및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거나 의뢰인에게 전달한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 제출 또는 열람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재판 또는 행정절차 등에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함으

로써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또한 의뢰인의 승낙을 강요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승낙을 강요한 자를 처벌하는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비밀유지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13조제3호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성완)

- 변호사에게 제공한 비밀이 공개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으면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있고, 진실을 듣지 못한 변호사는 적절한 법률자문이나 변론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의뢰인이 개정규정을 악용하여 변호사를 통해 증거자료를 은닉하는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사법정의 실현에는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과 변호사 비밀유지특권은 연혁적으로 영미에서 다수의 판례를 통해 세부 범위와 한계에 관한 법리가 형성되었으나 이러한 경험 없이 우리 법제에서 전면적으로 도입할 경우 상당 기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따라서, 변호사 비밀유지특권의 도입에 대하여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충실한 보장 측면과 사법의 공정성, 실체적 진실 발견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용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